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동석	지봉기	진준호	02/17 권순경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기봉
	조직경영팀장		김윤섭
	경리팀장		김병로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63
결재일자	2014.2.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 2014년도 -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4.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사건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2014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4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I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대상
소방 공무원	소방정감 이하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기능직공무원	전 체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소방관서의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각 기관별 청원경찰은 별도 단위를 구성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지급
 - 직종개편(2013.12.12.)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별정직공무원은 종전 지급단위 및 방법 적용(기능직은 별도, 별정직은 일반직과 통합)
- ※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 [붙임 1] 참조

■ 지급기준일 : **2013. 12. 31**(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12. 31.)

■ 지급 단위

-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준감 이상 : 본청
 - 지방소방정·령 : 소방재난본부

- 지방소방경 이하 : 소방재난본부(청와대소방대 포함),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 일반직 등

- 본부, 소방서 소속 직원 : 소방재난본부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직원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소속 직원 : 소방학교

■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일시금)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실적가점+조정점수+출산가점

■ 2014년 달라진 사항

- 행정처분(주의·훈계), 불문경고 중, “주의” 처분자 성과상여금 “B” 등급 일률적용 제외(‘13년도에는 ‘주의’ 처분시, 일괄 ‘B’등급 적용)
 - 단,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처분 받은 자(청렴 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종전과 같이 “B”등급 유지
- 직종개편(‘13.12.12)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범위 변경
 - 일반직으로 개편된 기능·별정직공무원은 지급방법 및 지급단위 종전 규정 적용
-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 명시(하사이상)
 -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 두 번째 해 : 국방부 지급 ※ 일반사병은 원 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 일반직 등 공무원 근평시기 조정(6월,12월→4월,10월)에 따라 근무 성적 평가가 없는 성과상여금 대상자(9월 이후 신규임용자·승진자)는 별도 평가기준으로 하반기 근평점수 부여
 - 근평점수가 없는 9월 이후 신규임용자·승진자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준용하여 평정점수 만점(70점)의 60퍼센트 반영하여 42점 부여
 - ※ ‘14년 상반기 실제 근평과는 관련 없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이며, 소방공무원은 별도 기준 적용함

■ 소요예산(추정) : 18,364백만원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소방재난본부(인사팀) 제출 → ⑤ 예산 재배정(재무과) → ⑥ 지급단위별로 개인지급

II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6,665명(소방 6,563, 일반·별정직 31, 기능직 58, 청원경찰 13)
- 지급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붙임2 참조)의 평균 110%
- 지급일 : 2014. 3. 12.(예정)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인원비율	20%	40%	40% 이내	2% 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기능직 등	172.5%	125%	85%	0%

⇒ S:A:B:C = 20:40:4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기본원칙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에서 소방관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최종 확정 후 이를 지급단위인 소방관서로 배정

○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40:4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40:40:0)
S등급 : 5.8명, A등급 : 11.6명, B등급 : 11.6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12명, B등급 : 11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12명, B등급 : 9명, C등급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 + ②)
- ④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 ⑤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④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④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 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간에 조정 가능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70점), 조정점수(20점), 실적가점(5점) 및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3년 상반기 + 2013년 하반기 평정점) / 2

- 실적가점 : (2013년 상반기 + 2013년 하반기 실적가점)

※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하며, 소방공무원은 5점 일괄 부여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3> 참조

- 출산가점 : 2013. 1.1~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① 일반직 공무원 등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나, 소수직렬 5급 공무원은 시 조정결과 반영
- ② 소방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③ 일반직 공무원 등 중 근평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하반기 근평점수가 없는 9월 이후 신규자·승진자는 근평점수 만점의 60퍼센트(42점) 반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업무실적·부서장기근무·격무업무 수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조정점수를 통하여 적절한 등급 부여
(예시) 신규자 : 하반기 근평(42점)을 2회 인정, 승진자 : 상반기 근평 + 하반기근평(42점)
- 단,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④ 조정점수는 지급단위별·직급(계급)별로 부여
- ⑤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 ⑥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직급별 현원이 많은 지급단위에서는 직렬별로 평가 가능
- 기능직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예시 : 5급이 1인일 경우 6급과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3.1.1~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3.1.1~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소방행정과 경유 인사과 제출
- ※ 대내·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파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중앙부처간 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B등급 보장
- 근 거 : 소방방재청 계획인사교류 계획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 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붙임3>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붙임3>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20점) 부여
 - ※ 각 기관 및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장기 부서근무/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2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며,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반드시 포함 ※ <별표 3> 참조

-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시 고려

■ 징계 및 불문경고·행정처분(훈계·주의 등) 통보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및 불문경고·행정처분(훈계·주의 등)자가 타 기관(부서)으로 전보 된 경우 평가 시 누락되지 않도록 문서로 통보

※ 본부 직원은 소방감사반에서 통보하며 119특수구조단 직원은 119특수구조단에서 통보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담당자 교육

- 일 시 : 2014. 2. 18.(화) 16:00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본부 각 과·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학교·소방서 행정팀장 및 인사담당
- 내 용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금지
 - 성과상여금 적용범위 및 지급계획
 -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등

■ 주요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본부 → 소방관서) : '14. 2. 17.(월)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별지2호서식, 소방관서 → 본부) : '14. 2. 18(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소방관서) : '14. 2. 26(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본부) : '14. 2. 28(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소방관서) : '14.3.3(월)~ 3.4(화)
- 지급조서 제출 (본부 → 재무과) : '14. 3. 5(수)
- 지 급 일 : '14. 3. 12(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 ① 지급기준일('13.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3.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연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2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에는 1월로 함)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리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 ④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3. 12. 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2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에는 1월로 함)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⑦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3.11.1 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3.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 단,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간의 지원 근무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 ⑧ '13.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13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률 \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별정직·기능직	172.5%	125%	8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4년 기준액 ⇒ 조정지수(0.94178) 적용시)

구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94178)
소 방	소방정감	5,500,300	5,180,072
	소방준감	4,489,100	4,227,744
	소방정	4,069,900	3,832,950
	소방령	3,597,100	3,387,676
	소방경	3,194,800	3,008,798
	소방위	2,887,400	2,719,295
	소방장	2,540,200	2,392,309
	소방교	2,167,400	2,041,213
	소방사	1,897,700	1,787,215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포함)	5급	3,486,100	3,283,139
	6급	2,997,100	2,822,608
	7급	2,548,000	2,399,655
	8급	2,116,700	1,993,465
	9급	1,799,800	1,695,015
기 능 직	기능5급	3,170,100	2,985,536
	기능6급	2,997,100	2,822,608
	기능7급	2,548,000	2,399,655
	기능8급	2,116,700	1,993,465
	기능9급	1,799,800	1,695,015
	기능10급	1,799,800	1,695,015
청원경찰	경사상당	2,540,200	2,392,309
	경장상당	2,167,400	2,041,213
	순경상당	1,897,700	1,787,215

【붙임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조정점수 부여 기준

-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에 따른 조정점수 부여(15일 이상은 1월로 반영)
- 소방관서별 격무·기피부서 재직기간에 따른 조정점수 부여
- 기타 주요 고려사항
 - 지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3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등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단위 : 명)

구분	계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6,563	1	6	29	109	306	1,316	2,386	908	1,502
본부	302	1	4	4	25	26	47	73	68	54
센터	174	0	1	1	7	7	25	94	28	11
학교	51	0	1	1	9	7	10	13	8	2
종로	294	0	0	1	3	15	49	115	54	57
중부	269	0	0	1	3	14	47	89	53	62
광진	336	0	0	1	3	11	67	137	42	75
용산	246	0	0	1	3	10	49	87	34	62
동대문	264	0	0	1	3	14	62	89	33	62
영등포	279	0	0	1	3	11	52	106	28	78
성북	194	0	0	1	3	11	49	68	14	48
은평	192	0	0	1	2	11	40	56	27	55
강남	310	0	0	1	3	15	52	112	36	91
서초	298	0	0	1	3	11	61	115	43	64
강서	267	0	0	1	3	11	52	98	29	73
강동	259	0	0	1	3	11	61	99	30	54
마포	297	0	0	1	3	10	54	119	42	68
도봉	197	0	0	1	3	11	44	61	32	45
구로	390	0	0	1	3	11	78	159	48	90
노원	230	0	0	1	3	10	56	79	32	49
관악	252	0	0	1	3	11	56	86	27	68
송파	305	0	0	1	3	12	61	118	48	62
양천	253	0	0	1	3	11	47	97	30	64
중랑	235	0	0	1	2	11	65	72	34	50
동작	228	0	0	1	3	11	32	89	36	56
서대문	222	0	0	1	3	11	56	75	24	52
강북	189	0	0	1	3	11	39	70	19	46
청와대	30	0	0	0	1	1	5	10	9	4

일반 · 별정직공무원

(단위 : 명)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31	0	1	11	18	1	0
본부	4			3	1		
센터	24		1	8	15		
학교	1				1		
종로	1				1		
도봉	1					1	

기능직공무원

(단위 : 명)

구분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58	6	32	20	0	0
본부	7	1	4	2		
센터	17	4	5	8		
학교	9	1	5	3		
종로	2		2			
중부	1		1			
광진	1		1			
용산	1			1		
동대문	1		1			
영등포	1		1			
성북	1			1		
은평	1		1			
강남	1		1			
서초	1		1			
강서	1		1			
강동	1			1		
마포	1			1		
구로	2		1	1		
노원	1		1			
관악	1			1		
송파	1			1		
양천	1		1			
중랑	1		1			
동작	2		2			
서대문	1		1			
강북	1		1			

청원경찰

(단위 : 명)

구분	소계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계	13	1	1	11
센터	9	1	1	7
학교	4			4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소방서)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인 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천 원)
	총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소 방	소 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직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청원 경찰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속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가점수 (7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일자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	
기타 참고사항		
<p>「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월 일</p> <p>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p>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2.1.1~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p>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p>					